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23 선고 2022가단5088060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, 손성락

피 고 1. B

2. 한국토지주택공사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6. 23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91,996,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2. 25.부터 2022. 3. 26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22. 4. 13.까지는 연 6.81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나.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,910,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
4. 제1,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회기

별지